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69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우수생활 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 등(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24조 제1항제1호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5. 14.
3. 회 부 일 : 2026.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우수생활 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 등(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24조제1항제1호 신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 시설이 신청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우수문화시설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생활문화시설이 아닌 시설은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3).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 ①</u>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u> <u>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u> <u>생활문화시설을 우수한 생활문화시</u> <u>설(이하 “우수생활문화시설”이라 한</u> <u>다)로 인증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우수생활문화시설</u> <u>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u> <u>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u> <u>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u> <u>하여야 한다.</u> <u>③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은</u>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u> <u>④ 우수생활문화시설이 아닌 생활문</u> <u>화시설은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u> <u>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u> <u>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우</u> <u>선적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u> <u>수 있다.</u> <u>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u> <u>인증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3</u> <u>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u> <u>장할 수 있다.</u> <u>⑦ 그 밖에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u> <u>및 인증 연장의 기준·절차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u> <u>정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증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생활문화시설은 현행법 제2조제5호¹⁾에 따라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임.

현행법 시행령 제2조²⁾는 생활문화시설을 보다 구체화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³⁾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⁴⁾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현

1)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행법 제7조제1항5)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함),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⁶⁾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건립·설치된 시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임.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문화 격차 해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⁷⁾되고 있는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읍면간 지역 문화 향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5)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6)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7)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학관이 해당하며 2025년 3,337개 중 수도권 1,231개(36.9%)이고, 지방 2,106개(63.1%)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이러한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는 각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의 확충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전문인력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⁸⁾에 따라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비하여 다른 부처 소관 생활문화시설과 민간 시설들의 관리·운영현황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받은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문화서비스 제공 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8)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인증 표시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제도, 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제도, 인증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문화시설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나아가,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활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간 문화 격차 역시 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24조제1항제1호는 우수생활문화시설이 아닌 생활문화시설이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특정 분야를 지원·육성하려는 취지인 인증제도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⁹⁾이므로, 유사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조항 간 형평성

9)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확보 측면에서 개정안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8조의2제1항은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의2제7항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과 재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 중 인증의 기준에 관한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안 제8조의2제1항과 제8조의2제7항이 중복되고, 인증 연장시에도 최초 인증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인증 및 재인증의 ‘기준’을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유사입법례¹⁰⁾를 감안할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한 자

10)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때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 및 지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가 넓어 우수 기준 등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1년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 여부는 국가의 우선 지원대상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인증 표시에 관한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⑤ 우수치유헌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헌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우수치유헌광시설 인증의 절차·방법·유효기간·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84